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출 서류 서식별 작성요령 안내

1.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작성 요령 : 1p
2. 부동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 : 3p
3.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 : 9p
4.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 13p

\* 신청자들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4가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별도로 안내드리오니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7.

더불어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작성요령

## □ 작성예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선거구명	(○○선거구)				성명			홍길동 (洪吉童)					
(단위 : 천원)													
연도	후보자 와의 관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 체납액
2020 년도	부	신고거부	-	-	X	X	X	X	X	X	-	-	-
	본인	1,500	-	-							1,500	-	-
	배우자	-	-	-							-	-	-
	장남	200	-	-							200	-	-
	차남	-	-	-							-	-	-
소 계	1,700	-	-	1,700	-	-							
2021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100	-	-	-	-	-	-	-	-	100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	-	-	-	-	-	-	-	-	-	-
소 계	1,800	-	-	400	-	-	350	-	-	2,550	-	-	
2022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	-	-	-	-	-	500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100	-	-	50	-	-	200	-	-	350	-	-
소 계	2,350	-	-	460	-	-	550	-	-	3,360	-	-	
2023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장남	200	-	-	20	-	-	-	150 (15.4.30)	-	220	150 (15.4.30)	-
	차남	300	-	-	10	-	-	500	-	-	810	-	-
소 계	2,500	-	-	510	-	-	850	350	200	4,460	350	200	
2024 년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장남	200	-	-	20	-	-	-	150 (15.4.30)	-	220	150 (15.4.30)	-
	차남	300	-	-	10	-	-	500	-	-	810	-	-
소 계	2,500	-	-	510	-	-	850	350	200	4,460	350	200	
2025 년도	부	X	X	X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380	-	-	1,000	-	-	1,380	-	-
	배우자				-	-	-	-	-	-	-	-	-
	장남				20	-	-	-	-	-	20	-	-
	차남				-	-	-	-	-	-	-	-	-
소 계	400	-	-	1,000	-	-	1,400	-	-	1,400	-	-	
합 계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	-	-
	본인	7,500	-	-	1,900	-	-	1,800	-	-	11,200	-	-
	배우자	1,100	-	-	100	-	-	150	200	200	1,350	200	200
	장남	1,000	-	-	100	-	-	450	150 (15.4.30)	-	1,550	150 (15.4.30)	-
	차남	400	-	-	60	-	-	700	-	-	1,160	-	-
합 계	10,450	-	-	2,370	-	-	3,100	350	200	15,920	350	200	

## □ 작성요령 (소득세 등 납부채납사항)

### ○ “후보자와의 관계”란

-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기재함)

### ○ “세금 납부채납액”란

- 납부 및 채납세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이 발생한 금액 기재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자신의 세금납부채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
- 금액은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
- 해당연도 과세 분 중 채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에 완납 일자 기재
- 소득세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귀속분을 기재
-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귀속분을 기재

# 부동산보유현황 작성 요령

## □ 부동산보유현황 작성 예시

### 부동산 소유 현황(기준일 25.12.31)

현황	구분	관계	성명	소유주택수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본인	본인	홍길동									
	배우자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직계존속											
구 분	권리자	권리종류	지목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가 (천원)	평가액 (천원)	용 도	거주자	거주형태	비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본인	소유권	임야	○○광역시 ○○구 ○○동 ○○번지(200㎡)	2010.3.2	무상취득	5,000	7,000	주거용	본인	자가	
			전	○○도 ○○시 ○○면 ○○리 ○○번지 (300㎡)		매매	3,000		영업용	○○○○에게 임대	전세	
			대지	○○도 ○○시 ○○면 ○○리 ○○번지 (300㎡)		분양	4,000		주상복합용	공실	월세	
	배우자		임야	○○광역시 ○○구 ○○동 ○○번지(500㎡)			2,000		상업용		친척집	
	자녀		전	○○도 ○○시 ○○면 ○○리 ○○번지 (300㎡)			4,000		공장용		기숙사	
소계							5,000					
건물 (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본인		주택	○○시 ○○구 ○○로 ○○ (건물 165㎡중80/대지660㎡중 330)			200,000					
			임차권	○○시 ○○구 ○○로 ○○ (건물 60㎡)			350,000					
	배우자		빌딩	○○시 ○○구 ○○로 ○○ (건물 165㎡중80/대지660㎡중 330)			150,000					
			아파트	○○시 ○○구 ○○로 ○○ (건물 120.00㎡)			400,000					
	자녀		오피스텔	○○시 ○○구 ○○로 ○○ (건물 95.00㎡)			200,000					
소계							215,000					
합계	본인						562,000					
	배우자						552,000					
	자녀						204,000					
	총계						750,000					

## □ 부동산보유현황 개요

○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 부동산신고(산정)기준일 : 2025. 12. 31 기준

○ 신고대상의 범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의 부동산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 신고대상부동산의 내용

- 부동산(토지 · 건물)의 소유권 ·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소명내용 기재 : 부동산 취득일자 · 취득원인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기재순서 : 신고부동산별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순서로 작성함

- 고지거부 허가 요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만 고지거부 허용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 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

-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유현황을 제출 하여야 하며,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부동산소유사항 없음”으로 표시

## □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토지)

### ○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매 도 :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
  - 매 입 : 현재 중도금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계약금만 수수한 경우 등록 제외)
    - ※ 대지상 건물이 축조된 경우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에 기재

### ○ “권리 종류”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 전세권(임차권) ·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함

### ○ “지목 종류”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염전 · 대지 · 공장용지 · 임야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흥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

### ○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 : 토지 소재지(세부주소 포함)와 면적(m<sup>2</sup>) 기재

### ○ “취득일”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 “취득원인” : 목적, 방법(매입 · 상속 · 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 · 상속 · 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 “취득가격” :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구입가격 기재함

### ○ “평가액” :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 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m<sup>2</sup>)”을 기재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 기재
  -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

○ “용도” : 주거용, 영업용, 상업용, 공장용 등

○ “비고”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충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 기재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 기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 기재

## □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건물)

○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 무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 “지목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소재지(세부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sup>2</sup> (1평은 3.3m<sup>2</sup>)로 환산하여 기재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 ×

○ “취득일”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원인”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취득가격” :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구입가격 기재함

○ “평가액” :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 평가액 기재 관련 사이트

구분	서비스명	주소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라미	<a href="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a>
실거래가격 확인	부동산 정보포털사이트	<a href="http://seereal.lh.or.kr">http://seereal.lh.or.kr</a>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가)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sup>2</sup>)”으로 산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나)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금액 기재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 표시(△)하여 기재함.

○ “용도” :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비고”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 기재(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 기재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 기재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

□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 작성 예시

##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기준일 25.12.31)

	성명	홍길동	선거구명	시·도	선거구
후 보  신 청 자	구분		성명		합계
	본인 소유		홍길동		48,000,000원
	배우자 소유		홍길자		48,000원
	직계비속 소유				원
	직계존속 소유				
	(필요시 칸 늘려 작성)				원
	합계				48,048,000원

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본인 홍길동 인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 작성 예시

##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 (기준일 25.12.31)

● 신청 지역구 :

● 성명 :

연번	후보자와 관계(성명)	가상자산 서비스명	가상자산 종류		23년 12월 31일 재고		비고
			명칭	심볼	수량	가액	
1	본인	빗썸	비트코인	BTC	1	48,000,000	
소계					1	48,000,000	
1	배우자	업비트	폴카닷	DOT	0.23984	20,000	
1	배우자	업비트	이더리움	ETH	0.23489	28,000	
소계					0.47473	48,000	
총계					1.47473	48,048,000	

※ 가상자산 서비스명 및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 □ 가상자산 보유 현황 개요

- “구분”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기재
- “성명” :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 기재, 해당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 칸 늘려 작성  
\* 예시 : 직계존속이 2명일 경우, 직계존속을 2칸으로 늘리고 성명 모두 기재
- “평가액” : 개인별로 모든 가상자산서비스에서 가진 가상자산의 자산의 총액 기재, 이 때 금액은 25년 12월 31일 가치의 금액으로 기재

## □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

- “후보자와 관계(성명)”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기재 후 성명 기재
- “가상자산 서비스명” : 가상자산 거래를 운용하는 서비스 명 기재, 이때 서비스 명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조회” 참조
- “가상자산 종류”
  - 1) “명칭” : 가상자산의 명칭 기재 / 예 : 비트코인
  - 2) “심볼” : 가상자산의 심볼 기재 / 예 : BTC
- “수량” : 기준일 시점으로 해당 심볼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기재
- “가액” : 기준일 시점으로 해당 심볼의 평가액 기재(※단가 아님 유의)
- “소계” : 개인별 보유 가상자산 ‘심볼’ 의 수량 합계와 평가액 합계를 기재
- “총계” : 구성원 전체의 ‘심볼’의 수량 합계와 평가액 합계를 기재

## □ 기타사항

- 가상자산 종류
  - 1) 근거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2) 가상자산 범위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 3) 제외 대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상자산 제외 대상
  - 1)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8)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9)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금융정보분석원 의견

- 1)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2021.10월 발간한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등을 고려할 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 2)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상자산에 해당함. (단,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소위, CBDC)는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예외로 규정)
- 3) 토큰증권 (STO, Security Token Offering) : 현재 토큰증권은 발행이 불가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예정임.



## 재 산 신 고 서(기준일 25.12.31)

선거구명		시·도	선거구	성 명		
재산의 구 분	본인과 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 액 (천원)	비 고	
부동산	본인	토지(임야)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0 (0,000㎡ 중 000㎡)	12,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번지 (대지 0000㎡, 건물 000㎡)	760,000		
	장남	전세권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00번지 (대지 0000㎡, 건물 000㎡)	500,000		
	장녀					
부동산 (부동산 준용권리)	본인	자동차	2020년식 아반떼 가솔린(배기량 1,600CC)	10,000		
동산	본인	정기예금	농협은행	20,000		
동산	본인	주식	삼성전자 1,000주, 카카오 500주	105,000		
동산	본인	보험	농협생명보험	10,000		
동산	본인	채무 (대출금)	신한은행 대출금	-80,000		
합 계				1,337,000		

※ 합계란은 채무를 제외한 합산금액에서 채무를 감하여야 함

※ 파란글씨 기재사항은 작성 예시로 참고하여 본인의 재산 내역 기재

## □ 재산신고서 개요

○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 재산신고기준일 : 2025. 12. 31 기준

○ 신고대상의 범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의 부동산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재산의 내용

- 부동산(토지 · 건물)의 소유권 ·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자동차 · 선박,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포함),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 그 밖에 금 · 백금, 보석류, 골동품 ·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순서 : 신고부동산별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순서로 작성함
- 소유한 부동산(토지 · 건물 등)의 가액은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실제 매입 · 매도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 상속이나 기타 사유로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
- 재건축 분양권, 가족 사이의 사인간 채권 · 채무 등도 모두 신고
- 가상자산의 경우 금액 ·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소유사항 없음” 으로 표시

○ 고지거부 허가 요건

- 고지거부 허가 요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만 고지거부 허용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 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

-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상	심사기준	
직계존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전받으면 허가
직계비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허가
	타인부양	•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나 양부모 등 자녀를 부양하는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2024년)

(단위 :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1,336	2,209	2,828	3,437	4,017	4,570	5,108
농촌지역	921	1,524	1,951	2,371	2,771	3,153	3,524

※ 주소지가 '읍, 면'이면 농촌, 그 외 도시지역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 1인 증가시마다 538천원씩 증가(8인: 5,646천원)

####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월 소득	185	586	957	1,242	892	2,181	1,455	2,583	5,641

## □ 작성순서 및 요령

신고항목	주요신고내용
- 부동산(토지·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실거래가격(실제 매입·매도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li> <li>※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활용</li> <li>타인건물에 대한 전세(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신고</li> </ul>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으로 등록</li> </ul>
- 광업권·어업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li> </ul>
-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li> </ul>
- 예금(보험 포함)·유가증권 ·사인간 채권·채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li> <li>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li> <li>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li> <li>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li> <li>가족 간의 채권·채무(대여)도 빠짐없이 신고</li> </ul>
- 금·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li> </ul>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li> </ul>
-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li> <li>※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li> <li>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면적 기재</li> </ul>
-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li> </ul>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 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배출액 등 기재</li> </ul>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li> </ul>
- 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 기재</li> </ul>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준시가조회]→ [상업]→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주소 검색]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p>〈 개별공시지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li> </ul> <p>〈 지방세 시가표준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li> <li>•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li> <li>•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li> </ul>